

■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■

제1조(주임교수)

- ① 본 대학원은 각 학과마다 주임교수를 두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주임교수는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주임교수는 학부 학과장이 겸임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전공분야의 상이, 직급, 연계 학과의 학부내 부재 등의 문제로 대학원 학사업무관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과의 대학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주임교수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.

제2조(주임교수의 직무) 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당해 학과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과목 설정 및 개설을 위한 학사절차의 관장
- ② 당해 학과의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관장
- ③ 석·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 발표회 및 학위논문 공개발표회 관장
- ④ 개별 학생의 지도교수에게 학사지도위원회 구성을 위촉
- ⑤ 기타 당해 학과의 중요학사 업무의 처리

제3조(주임교수의 임기)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지도교수)

- ① 본 대학원은 개별 학생의 학업과 연구활동을 위해 학생 개인별 지도교수를 둔다.
- ②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첫 학기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지도교수의 자격)

- ① 석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본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본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지도교수의 직무) 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당해 학생의 수강과목선택 및 학위청구논문작성의 지도
- ② 석·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 발표회 및 학위논문 공개발표회 참석 및 지도
- ③ 지도교수로 위촉된 후 당해 학생 학사지도위원회의 구성
- ④ 기타 당해 학생의 학사일정 지도

제7조(학사지도위원회)

- ① 학사지도위원회는 당해 학생의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학사지도위원회는 당해 학생의 교과목 수강, 논문주제 설정을 지도한다.

제8조(학과 대학원위원회)

- ① 주임교수는 전공의 다양성과 특성에 따라 학과내에 2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되는 학과 대학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겸임하나, 학과특성에 따라 별도의 위원장(선임지도교수)을 두어 주임교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② 학과위원회는 교과과정 설정, 학점인정, 시간표 작성, 종합시험 진행, 특별전형 구술시험 참여 등 중요 학사업무처리에 관해 주임교수(또는 선임지도교수)를 자문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